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구미시민운동장 복합체육시설 내 설치된 인라인롤러경기장은 비인기 생활체육경기장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이고 체육대회(행사)이 외에는 사용신청이 없으므로 무료 개방하여 구미 인라인롤러 생활체육 인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하여 비인기 생활체육인 인라인롤러 인구를 확대하고자 함(안 별표 2, 별표 6)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인라인롤러경기장 사용허가를 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평 일		토 · 일 · 공휴일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박정희 체육관	주경기장		100,000원	300,000원	150,000원	400,000원
	보조경기장		50,000원	100,000원	80,000원	200,000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60,000원	100,000원	90,000원	200,000원
	필드		150,000원	250,000원	250,000원	350,000원
	행사		600,000원		900,000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트랙		40,000원	80,000원	65,000원	160,000원
	필드		80,000원	160,000원	160,000원	240,000원
	행사		400,000원		500,000원	
복합 체육시설	인라인롤러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씨름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농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다목적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금오 테니스장	실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실내(1면 기준)		15,000원	20,000원	20,000원	25,000원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	클레이코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축구장	주간	60,000원	70,000원	80,000원	100,000원
		조기 · 야간	80,000원	100,000원	120,000원	140,000원
	풋살장	주간	40,000원	50,000원	50,000원	60,000원
		조기 · 야간	50,000원	60,000원	60,000원	70,000원

○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체육시설 부속시설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전기	경기장 조명	시설기본료(40,000원) + 실사용료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일반전기	전기 실사용료	
전광판		시설기본료(25,000원) + 전기 실사용료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시설기본료(20,000원) + 전기 실사용료	박정희체육관
냉난방	냉방	시설기본료(25,000원) + 가스 실사용료	
	난방		
음향		시설기본료(20,000원) + 마이크사용료	
상하수도		상하수도 실사용료	
○ 부속시설사용료는 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경기장 조명은 조명탑 시설을 말한다. ○ 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공공요금 기본료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마이크사용료는 1개당 5,000원으로 한다. ○ 정하지 않은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공공요금의 경우 실사용료를, 기타시설의 경우 시장의 결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제목개정 2015.2.3.]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
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5.8.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비인기 생활체육인 인라인롤러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인라인 롤러 경기장의 사용료를 무료로 변경함으로써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인라인롤러경기장의 사용료 무료로 인한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계장 김준호 (☎480-4901)

체육진흥과 시설7급 심종진 (☎480-4903)

소관 실 · 과		체육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김 종 율
	담 당	김 준 호
	담 당 자	심 종 진 (480-4903)